

산업기술 확인제도란?

산업기술의 첨단화 및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정의)에 근거한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공합니다.

산업기술 확인 대상 범위

법 제2조(정의)

- ㉠ 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부리기술



산업기술 확인처리 절차



산업기술 유출의 벌칙 및 제재

법 제36조(벌칙)

- ▶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 산업기술을 국내에 유출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고의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얻은 재산 몰수 등

문의안내

산업기술 보유기관은 산업기술보호 관련 상담, 교육, 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등 협회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에 우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핵심기술 보호지원센터 정책연구팀

02-3489-7037 / sclim@kaits.or.kr / www.kaits.or.kr / www.is-portal.net

산업기술보호 지원제도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지원(온라인 교육, CSO양성교육 등)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 전용 사이트를 통해 산업보안 교육영상과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보안 인식제고와 기술보호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지원
CSO 양성교육	보안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차세대 CSO(Chief Security Officer)를 양성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무상지원)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홈페이지(kaits.learning-hub.co.kr)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을 대상으로는 단체가입 서비스 제공, 문의처 : ycyou@kaits.or.kr) → 강의 수강
CSO양성교육 신청방법 (무상지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공지사항,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홈페이지(www.is-portal.net) 공지사항에 각 회차 교육 안내문 게시 → 교육 신청(연 6회) → 교육 수강

산업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닥터	산업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보안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영역별 취약점 진단, 미흡사항 해결 및 대응 방안제시 등 맞춤형 보안컨설팅 지원(1~3회 방문)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국가R&D 보안과제 수행기관 우선지원
신청방법 (무상지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접속 → 공지사항 → 보안닥터 지원사업 공고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사업공고(1~2회/년)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모집))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무상)

온라인을 통한 해킹 및 내부 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백신 등) 무상 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E-mail 및 FAX) * 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에서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5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산업기술보유기관 대상)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운영
신청방법 (수수료 1만원)	산업보안 정보도서관(www.is-portal.net) 접속 → 조정신청서 다운 → 신청서 작성 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산업기술확인제도 운영

산업기술 확인제도	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에 신속한 대응 가능
신청방법 (수수료 1만원)	산업보안정보도서관(www.is-portal.net) 접속 → 회원가입 → 산업기술 확인제도 신청(연중수시)